

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549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0년 2월 10일

제안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회의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의정활동에 따른 사전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1월 15일까지 연간 의회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함.(안 제3조의 2)
- 나. 임시의장 제도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하기 위해 임시의장의 직무범위 및 기간을 규정함.(안 제10조)
- 다. 회의도중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토록 함.(안 제14조 제3항)
- 라. 발언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.(안 제72조의 2)

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 2(연간의회 운영계획) ①의장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의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운영계획에는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“제10조”를 “제10조의 2”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임시의장) ①의장, 부의장이 모두 궐위 이외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한다.

③임시의장의 의장직무 대행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로 한다

제12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,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여야 하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14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회의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.

제72조중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7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2조의 2(시정질문) ①본회의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.

②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③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다.

④시정질문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시정질문할 의원의 순서는 질문신청 의원의 다선(多選), 연령, 전회기의 질문여부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3조의2 (연간의회운영 계획)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의회의 연간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운영계획에는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제10조 (임시의장) ①의장, 부의장이 모두 궐위 이외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u> <u>②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한다.</u> <u>③임시의장의 의장직무 대행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로 한다.</u>
<u>제10조 (임시의장의 선거)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·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.</u>	<u><현행 제10조와 같음></u>
<u>제12조 (회기) 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</u> <u>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.</u> <u>③~④</u>	<u>제12조 (회기) ①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여야 하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</u> <u>②~③ <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></u>

현행	개정안
제14조 (회의에 관한 선포) ①~②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(생략) 제72조 (시장등의 출석요구) ①~③ (생략)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 <u><신설></u>	제14조 (회의에 관한 선포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회의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.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72조(시장등의 출석요구) ①~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제72조의 2 (시정질문) ①본회의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. ②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 ③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④시정질문할때의 <u>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 ⑤의장은 <u>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⑥시정질문할 <u>의원의 순서는 질문신청 의원의 다선(多選), 연령, 전회기의 질문여부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.</u>